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36
----------	-----

2024. 7. 22.(월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4년 7월 3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7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7월 15일

-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환경산림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임산부를 예우하는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신설하고, 숙박시설의 우선예약 대상자 추가* 및 주중 이용객에게 결제금액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기준을 마련해 도내 관광진흥

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,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 중복금지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.

* 다자녀 가정, 장애인, 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

나. 주요내용

- 「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이하 “충청북도 임산부 지원 조례”)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정의 신설(안 제3조제18호)
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(이하 “산림휴양법”)」 제21조의5에 따라 우선예약 대상자 추가(제11조제2항)
- 「산림휴양법」 제21조의5 및 「충청북도 임산부 지원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“임산부”를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에 추가(안 제12조제1항제4호)
-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1개 사항만을 적용 신설(안 제12조제2항제3호)
- 「산림휴양법」 제21조의5 및 「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」 제4조 등에 근거하여 주중* 이용객에게 숙박금액의 50%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기준 신설(안 21조, 별표2)

* 본 조례 상의 “주중”이란,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정의함.

3. 검토보고 요지 (정법주 수석전문위원)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

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, 임산부의 복리증진과
예우를 갖추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.

- 또한,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주중 이용객에게 숙박금액의 50%를
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 마련은 충북지역의 관광산업 촉진과
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활성화 발전 모색 및 경쟁력
강화에 도움될 것으로 사료됨.
-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상위법규에 위반되거나 침해하는 사항이 없으며,
조례안 예고(' 24. 5. 24.~6. 13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임산부의 복리증진과 사회적
예우를 갖추는 규정 마련과 아울러, 충청북도의 빼어나고 아름다운
산림자원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있어서, 찾고·즐기고·머무는
자연휴양림의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활성화 발전 및 충북 관광진흥
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- 다만, 자연휴양림 주중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유도하는 지역상품권
환급에는 해당 지역상품권을 우선할지 이용객이 요구하는
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지 등의 투명·공정한 내부기준이 필요할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6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7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636

제출연월일 : 2024년 7월 3일
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- 2023. 12. 29. 제정·시행된 「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 등에 맞게 임산부 혜택 신설 반영함.
- 「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조령산자연휴양림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중 숙박시설 예약자에게 시설사용료 감면과 별개로 결제금액의 50%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기 위한 기준을 신설 반영함.
- 우선예약 대상자에 다자녀 가정·장애인·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 등을 추가하여 경제적·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하려는 것임.
-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의 중복 금지 조항을 추가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감면 혜택에 혼동을 줄이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임산부 정의 항목 신설(안 제3조제18호)
- 우선예약 대상에 다자녀 가정·장애인·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 추가(안 제11조제2항)
- 「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(안 제12조제1항제4호)
-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의 중복에 대한 금지 조항 추가 신설(안 제12조제3항)
- 주중 숙박시설 예약자에게 결제금액의 50%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(안 제21조)
- 임산부 시설사용료 감면 신설(별표2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”로 한다.
제3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“임산부”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재직자”를 “재직자, 다자녀 가정, 장애인, 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4호 중 “가정”을 “가정, 임산부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1개 사항만을 적용한다.

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,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(이용객에 대한 지역상품권 환급) 도지사는 주중에 숙박시설을 예약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제금액의 50%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. 다만, 도지사가 관광 사업의 활성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환급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거나 시설물을 사용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 2]

1. 시설사용료의 감면율

구분	감면대상	기준	감면요율	비 고
숲속의집, 복합휴양관, 무궁화관	장애인	중증	요금의 50% 할인	비 수 기 주 중 에 한 함
		경증	요금의 30% 할인	
	국가보훈대상자	1~3급	요금의 50% 할인	
		4~7급	요금의 30% 할인	
	다자녀가정		요금의 30% 할인	
	임산부		요금의 50% 할인	
	병역명문가 가족		요금의 30% 할인	
	도민		요금의 20% 할인	
	고향사랑 기부자		요금의 20% 할인	
	도민대상 및 명예도민		요금의 50% 할인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 및 <u>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</u> 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 <u>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7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조(정의) ----- ----- ---.
제11조(예약신청 및 성립) ① (생략) ② 도민 및 도내 소재 가족친화인증 기업·기관 <u>재직자</u> 는 숙박시설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예약하게 할 수 있다. ③·④ (생략)	제11조(예약신청 및 성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재직자, 다자녀가정, 장애인, 산림복지바우처대상자</u> -----.
제12조(시설사용료 등의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제12조(시설사용료 등의 감면) ① -----

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4. 장애인, 국가보훈 대상자, 다자녀 가정, 병역명문가 가족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

5.·6. (생략)

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21조 (생략)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-- 가정, 임산부-----

5.·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1개 사항만을 적용한다.

제21조(이용객에 대한 지역상품권 환급) 도지사는 주중에 숙박시설을 예약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제금액의 50%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. 다만, 도지사가 관광 사업의 활성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환급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22조 (현행 제21조와 같음)

관련법령 발췌

□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

제21조의5(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)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2. 21.>

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8. 2. 21.>[본조신설 2015. 1. 20.][제목개정 2018. 2. 21.]

□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임산부”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. [시행 2023. 12. 29.]

제5조(입장료 등 감면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(이하“도”라 한다)에서 설치·관리하는 문화·체육·관광시설(부설 주차장을 포함한다. 이하 “공공시설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·사용료·관람료·주차료(이하 “입장료등”이라 한다)를 감면할 수 있다.

□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

제4조(관광객유치 지원 등) ① 도지사는 사업자단체 또는 여행사가 도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5. 11.>

5. 그 밖에 도지사가 도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

② 관광객유치와 관련하여 시·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·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운영 내실화로 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환경을 제공하고자 필요 사항 규정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조령산자연휴양림 등 도내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주중 숙박시설 예약자에게 시설사용료 감면과 별개로 결제금액의 50%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함에 따른 소요 예산 발생

3. 관련조문

- 안 제21조(이용객에 대한 지역상품권 환급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 :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
- 내용
 - 추계기간(5년간)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조례안 제21조에 따른 지역상품권 환급에 대한 비용 추계

나. 추계 결과

- 시설이용객에 대한 지역상품권 환급
 - (신설) 지역상품권 환급
 - 객실수(44실) × 가동률(41%) × 평일수(160일) × 평균이용료(49천원) × 환급률(50%) = 70,72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

- 「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」 제4조1항에 따른 도비 지원(100% (年 70,720천원)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은

< 연도별 비용추계서 >

(단위: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세 출		70,720	70,720	70,720	70,720	70,720	353,600
(안 제21조) 지역상품권 환급		70,720	70,720	70,720	70,720	70,720	353,600
재원 조달		70,720	70,720	70,720	70,720	70,720	353,60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도 비		70,720	70,720	70,720	70,720	70,720	353,600
기 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△△특별회계							
구·군비	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